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6

발의연월일: 2020. 8. 24.

발 의 자: 강은미 · 이용빈 · 민형배

윤영덕 • 조오섭 • 장혜영

이은주・류호정・배진교

심상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습지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가는 이러한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일반적으로 습지는 홍수의 완화, 수질의 정화, 생물종 다양성 유지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그 보전 가치가 높으며, 최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장록습지의 경우에는 생물종 다양성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도심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임.

그러나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하천법」상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습지의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한 하천지역에 위치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

로 지정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보호와 정비사업을 통한 홍수재해 방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

법률 제 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늪"을 "늪, 하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하 천법」에 따른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	2
에 있는 호수, 못, <u>늪</u> 또는 하	<u></u> 늪, 하천
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u>.</u>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13조(행위 제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	
역(이하"습지보호지역"이라 한	
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	
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5. (생 략)
- ② ~ ⑥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